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51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이수진 · 백선희 · 박해철

송옥주 · 최혁진 · 김정호

민병덕 · 오세희 · 김선민

김 윤 · 이재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일정한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공적이전 소득으로 반영되고, 직역연금 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되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역시 가구 단위로 함께 조사되므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 자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현행법은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 및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일부 개선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는 그동안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온 제도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만 별도의 45%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직역을 이유로 일반 국민과 다른 수급기준을 적용하는 한계가 있는바, 기초연금은 궁극적으로 직역이나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지급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이 그 취지와 형평성에 더욱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부칙 제2조 등).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금의”를 “연금(이하 “직역연금”이라 한다)의”로,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그 배우자(이하 “직역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제1호 중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을 “제4항 각 호, 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⑦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등에 대한 기초연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제5조제4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으로,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제5조제4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기준액 차등적용에 관한 유효기간)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이하 “직역연금”이라 한다)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이하 “직역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 ----- ----- ----- -----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하여 산정한다.

② ~ ⑥ (생략)

<신설>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생략)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등에 대한 기초연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

1. 제4항 각 호, 제6항 또는 제7항에-----

2. (현행과 같음)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 제5조 제4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

-----.

② -----제5조제4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
-----제7항-----

-----.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삭 제>

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

중장애인일 것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
생한 사람일 것

3.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시행되는 장애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
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
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
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
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
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
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
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
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
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
다.